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수립 및 시공품질 점검》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9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819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	2
나. 수선유지비 지급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안 제8조의2 신설)	9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819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6. 4. 8.

다. 회 부 일 : 2026. 4.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 ----- ----- <u>해당 주택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u>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u> 2. <u>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한 보장기관별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와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u> 3. <u>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표준 시공기준 및 단가를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원액</u> 4. <u>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시공품질에 대한 기준</u>

현행	개정안
<신설>	5.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수선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방안 6. 보장기관이 보유한 수선유지비 관련 정보와 연계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및 수선유지급여 시스템의 활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현행법 상 주거급여¹⁾는 크게 임차 수급자에 대한 임차급여(임차료)²⁾와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³⁾로 구분됨.

1)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제3항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구규모,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 중 자가 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음.

【 수선유지급여에서 주택 노후도⁴⁾를 평가하는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자료: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이하	68점 초과	
지원 금액	일반	5,900,000원	10,950,000원	16,010,000원	
	도서지역	6,490,000원	12,045,000원	17,611,000원	10% 가산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구분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주요 수선내용(예시)
경보수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자료: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그런데 보수범위별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어 긴급보수⁵⁾ 실시 대상이 아닌 경우 수선주기에 맞추어서만 수선유지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⁶⁾ 내에서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대상,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⁷⁾하고 수선유지급여 수선대상자 선정 순서를 고려하여 선정⁸⁾함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5조(긴급보수의 실시) 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심각한 누수·동파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6) 2026년 예산에서는 2만 가구 지원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수선유지급여 : 160,423백만원)

962만원(평균 수선비용) × 2.0만 가구 × 보조율 83.38% = 160,423백만원

* 평균국고보조율 변경 : ('25년) 83.61% → ('26년) 83.38%

7)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되,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4조(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 수선대상(예비자를 포함한다), 수선내용 등에 대한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한다.

8)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수선주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

②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시행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에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④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한다.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선유지급여 수선대상자 선정 순서 】

동일 보장기관 및 보수 범위(경·중·대)내

- ① 동일 보수범위일 경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순으로 선정
 - ②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③ 가구원수가 동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가구 순으로 선정
- ※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는 우선 선정 가능

※자료: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⁹⁾에 규정된 수선유지비 지급방법 및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한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상황, 지원 단가, 인력, 재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여 수선가능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2. 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 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등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수선이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매년 수선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제2항에 따라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가 수선주기 이내에 제 5항에 따라 수선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일정 변경 등의 단순사유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서 차년도 공사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조사 없이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9)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거쳐 연간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실시하되,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산 상황에 맞추어 수립하여야 하는 현행 연간수선계획의 한계를 넘어 고려 요소들을 매년 검토하여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이를 통해 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수선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선 필요사항을 모두 지원하기는 예산상 제약이 있어 수선범위 및 수선주기라는 공통 기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의 성격 및 회계연도 전년도에 확정되는 예산편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예산 제약사항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연간수선계획에서는 수선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물량은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해당 물량이 부족할 경우 주거현금급여 예산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 확보함으로써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¹⁰⁾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선유지비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既 규정¹¹⁾되어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10)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p 참고

11)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

사항도 현행법 제3조 및 제19조에 既 규정¹²⁾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별도의 수선유지비 지급계획 수립은 기존 계획과 중복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수선유지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안 제8조제5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12) 「주거급여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나. 수선유지비 지급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수선유지비 지급 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선의 종류별로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선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수선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수선의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에 시공품질 점검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공품질 점검 결과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한 수선의 시공품질이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공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선실시기관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명령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선의 시공품질 등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선실시기관에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행	개정안
	<u>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u> <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된 수선 공사부터 적용	

안 제8조의2는 수선유지비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수선 종류별 시공품질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보장기관¹³⁾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의 실시를 수선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이 수선의 시공품질을 점검하여 시공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자 보수 명령, 시정조치, 건설사업자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령 상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수선의 실시를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규정¹⁴⁾되어 있음.

13)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4)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수선유지비의 지급방법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수선 실시 이후에는 수선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다음 번 보수범 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¹⁵⁾일 뿐 시공품질에 대한 조사는 아니며, 시공품질에 관한 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수선의 시공품질이 낮을 경우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저하시키며 수선 유지급여 지급을 위해 규정한 수선주기보다 빠르게 수선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 수선품질의 유지는 필요함.

그러므로 시공품질 기준을 정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선실 시기관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건설사업자에게 공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한편, 안 제8조의2제1항의 수선유지비 지급방법의 경우 안 제8조제1항16)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현행법과 같이

실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6조(수선유지급여 업무의 의뢰)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연간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의 실시 등을 의뢰받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수선유지급여 업무를 의뢰받은 기관은 경보수 및 중보수에 해당하는 주택등의 수선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또는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수선내용 등의 조사) ①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내 이미 수선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다음 번 보수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금번 수선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보수 등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수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1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안) 제8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함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 -----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및 품질과 관련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수선유지급여의 특성상 지역별, 주택종류별, 주택노후도별 시공품질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상이할 수 있어 최소한의 사항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현 행	개 정 안
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u>해당 주택</u> <u>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u>

참고

주거급여 개요('26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개 요

-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

□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123.1 (2인) 201.6 (3인) 257.2 (4인) 311.7만원/월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21.2~69.9만원/월)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우측은 전년대비 증가액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6.9	(+1.7)	30.0	(+1.9)	24.7	(+1.9)	21.2	(+2.1)
2인	41.4	(+1.9)	33.5	(+2.1)	27.5	(+2.1)	23.8	(+2.3)
3인	49.2	(+2.2)	40.1	(+2.6)	32.7	(+2.5)	28.3	(+2.7)
4인	57.1	(+2.6)	46.3	(+3.0)	38.1	(+3.0)	32.9	(+3.2)
5인	59.1	(+2.7)	47.9	(+3.1)	39.4	(+3.1)	34.0	(+3.3)
6인	69.9	(+3.2)	56.8	(+3.7)	46.3	(+3.5)	40.2	(+3.9)

-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지원자격(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여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율 0.3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주택수선 지원

보수범위별 보수한도액 및 수선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590만원 (3년)	1,095만원 (5년)	1,601만원 (7년)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추가지원(각 380만원 /50만원 한도), 침수우려가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가지원(350만원 한도)